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55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 임이자 · 조지연 · 유용원

윤상현 • 정점식 • 우재준

이상휘 · 김용태 · 조승환

김위상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도료의 용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 3.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조 또는 수입일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환경부장관은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료의 제조·수입량 및 공급·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를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

기준 및 도료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의 준수 여부"로 한다. 제91조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6.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도료의 용기·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
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생	합물함유기준 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용기・포장에 표시
	<u>하여야 한다.</u>
	1. 도료의 용도 및 휘발성유기
	화합물함유기준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
	<u>유량</u>
	3.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제
	조 또는 수입일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u><신 설></u>	⑥ 환경부장관은 도료의 휘발
	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료의
	제조ㆍ수입량 및 공급ㆍ판매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 7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 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 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 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 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 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 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 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 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 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 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 조 · 판매 · 사용 금지 또는 제 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 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 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 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 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 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 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 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 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 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 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 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
<u>준 및 도료 용기·포장의 표시</u>
<u>사항의 준수 여부</u>

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 13. (생 략)
- ② ~ ⑤ (생 략)
-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의5. (생 략) <u><신 설></u>

4. ~ 13. (생략)

<u>.</u>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1. ~ 3의5. (현행과 같음)
3의6.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도료의 용기・포장에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u>으로 표시한 자</u>

4. ~ 13. (현행과 같음)